

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 알아보기

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1일(화) ‘안전보건교육규정’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0호)을 개정했다. 3월 2일(목)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대해 알아본다.

참고자료. 「안전보건교육 안내서」, 고용노동부



안전보건교육 내용의 명확화

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, 현장실습생, 파견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교육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사업주 등은 근로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4, 5]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(정기, 채용 시, 작업내용 변경 시, 특별) 및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아래 사항을 고려해 교육을 실시한다.

첫째, 근로자 등이 사업장 내 작업환경, 작업내용, 성(性), 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할 것, **둘째**, 사업장 내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는 경우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조정할 것, **셋째**, 특별교육은 규칙 [별표5] 제1호라목에 따른 개별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, ① 단기간 작업(2개월), 간헐적 작업(60일)인 경우와 ② 일용근로자는 개별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작업에 따른 위험성과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내용을 정한다.

안전보건교육 형태의 다양화

교육 방법은 ① 집체교육, ② 현장교육, ③ 인터넷 원격교육, ④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한다.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,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,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로 실시한다.

현장 교육은 교육 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해 실시하고,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한다.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 과정을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한다면 과목당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 중 강의 동영상 비중은 50%(30분) 이상을 확보한다.(개정안, 2024.1.1. 시행)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인터넷(모바일) 교육을 할 때는 교육하기 전 작업 또는 운전 시 수강 금지 내용을 공지 후 확인하고, 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도록 관리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교육을 중단하고 집체, 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재교육을 한다.

[신설]비대면 실시간 교육 기준

구분	기준
플랫폼	-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 화상으로 표출되고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하며 보안 기능이 구축된 플랫폼을 사용한다. - 강사와 교안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. - 강사가 교안에 판서를 할 수 있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해야 한다.
과정 개설	- 전체 교육시간 동안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. - 과정 개설은 과정당 50회선 이하로 운영하고 회선당 인원은 1명으로 한다.
정보 제공	- 교육하기 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, 교육방법, 교육 진행 절차, 접속 주소(URL), 웹카메라·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, 교육생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를 한다. - 교육목표, 출결 관리, 수료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.
수강 신청	- 교육하기 전 교육생 성명, 교육과정명, 교육일시 등 수강신청 현황을 갖춰야 한다.
출석·수강 확인	- 플랫폼 화면, 실시간 게시판, 접속기록, 별도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교육생 출석·수강 여부를 과목별(차시별)로 확인하고 출결 관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. -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SNS, 전화,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. - 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한다.
질의 및 응답	- 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게 운영한다.

안전보건교육 평가의 강화(2024. 1. 1. 시행)



공통

- 1) 인터넷 원격교육과 우편통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- 2) 1)에 따른 평가(이하 “평가”)는 ① 객관식, 단답형,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, ② 개인별 보고서 등 과제물에 의한 과제 평가, ③ 학습 진도율 평가로 구성할 수 있다.
- 3)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
- 4) 평가는 주어진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정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.
- 5) 학습평가의 시험은 문제 pool 방식(3배수 이상 확보)으로 출제하고, 과제 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한다.
- 6)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, 과제 평가를 위한 과제 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 도구별 세부 내역 및 배점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며 이를 안내해야 한다.
- 7) 베낀 답안 방지 대책 및 베낀 답안 발생 시 처리 기준에 대해 교육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인터넷 원격교육



- 1) 평가는 과목별로 실시해야 한다.
- 2)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%, 학습 진도율 평가 20%로 하고 총 득점의 70% 이상 득점했을 때 이수처리하도록 한다. 다만, 학습 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%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
- 3) 과목별 학습을 마친 후 학습평가를 위한 시험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시험에서 불합격한 교육생이 해당 과목별 교육시간을 90% 이상 재학습한 경우 시험을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.
- 4) 2)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은 학습평가 대신 학습평가와 과제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제 평가의 배점 기준은 20% 이하로 한다.
- 5) 4)에 따라 과제 평가를 실시한다면 교육기관은 제출된 과제물을 검사해 교육생에게 통보해야 하며 검사 결과를 교육생 모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.



우편통신교육

- 1)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우편통신교육의 교육생에게 시험 일시 또는 과제물 작성 방법과 제출기한을 교육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.
- 2) 우편통신교육의 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정한다.
- 3) 사업주는 우편통신교육을 수강하였으나 2)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한 관리감독자에게 우편통신교육 외 다른 형태의 교육을 실시한다.

근로자 교육 강사 기준 확대
안전보건교육규정 [별표1]

- ①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② 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
- ③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2호에 따른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. 이 경우 이 사람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- ④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
 - 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과 보건관리전문기관, 법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법 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나.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다.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(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,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)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(임상심리사,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·학위 취득자)
 - 라. 「의료법」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마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
 - 바.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 - 사.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 - 아.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(게이트키퍼)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

직무교육의 내실화

직무교육은 사업주(기관장 포함)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·위험요인,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해 사업장 내 안전·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.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·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4, 5]에서 정하는 신규·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신규교육은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,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이다.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 보수교육 면제규정 개정은 기존에는 2박 3일(24시간)의 전문화교육만 보수교육이 면제되었다면, 개정안에서는 여러 전문화교육과정(예: 6시간, 10시간)을 이수하고 그 이수시간의 합이 보수교육시간(24시간) 이상이면 면제된다.

직무교육과정 개설·운영에 대한 교육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된다. 기존에는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과정(교재 포함) 개설·폐지 시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, 이번 개정으로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만 하면 된다.

기술 연계 현장교육(강평) 강화

공단의 지원 및 지도 관련 활동[■]중에 실시하는 현장강평 또는 교육을 근로자들이 이수하는 경우,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(1시간)으로 인정된다.

- 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, 건설업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확인, 중·소 규모 사업장 화재·폭발사고 예방 기술지도, 산업보건 고위험(질식) 종합관리, 안전투자 혁신사업



안전보건교육안내서 다운받기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→ 정책자료 → 정책자료실 → ‘안전보건교육 안내서’ 검색